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381
----------	------

2021.6.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5. 25. 서울특별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1. 5. 31.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1.6.17.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동구 도시공간개선단장 직무대리)

1. 제안이유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16조)

- 위원회의 명칭 변경:

(현행)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 (개정) “전시관 운영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3호)

Ⅲ. 검토보고의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자문·심의대상에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시관 운영위원회----- -----.
1.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2. 전시관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작년 서울마루의 첩성대 전시 논란에 대응하여¹⁾ 위원회의 자문·심의대상에 외부공간 활용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전시관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전시관의 주요 사안들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방침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검토보고서 붙임1) 이 조례에 심의기능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심의기능을 수행해 왔고, 이 개정조례안에서 자문·심의대상으로 추가한 ‘외부공간 활용계획’은 이 조례 제16조제1호에(주요 사업계획)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변동사항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안(자료: 도시공간개선단)

심의사항	자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별(전시, 프로그램)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 2. 사업별(전시, 프로그램) 개시일의 30일 이상의 변경 3. 사업별 전시장소의 변경 ● 전시관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극복 격려를 위해 서울마루에 첩성대를 전시하였으나,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전시물 설치에서 철거까지 작가와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첩성대 설치·철거로 인한 외부공간 훼손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일련의 문제들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첩성대 전시 기획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19년 말 제4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20년 기획전시의 하나로 자문 안전에 포함되었으나 해당 의견 제시는 없었음)

- 정리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전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개정 규정 외에도 조례 전반적으로 운영자문위원회 인용규정 등이 있으므로(검토보고서 붙임2), 관련된 규정들을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에서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으로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작년 첨성대 전시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 기능 강화 뿐 아니라, 전시 기획에서 작가 선정, 작품 설치 및 철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민들의 시대적 정서와 여론을 이해하고 전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또한, 우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와 같이, 전시관이 건축 분야나 일부 단체 등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계획·주택·환경 등 유관 분야 및 일반 수요자들이 활용하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건축 공공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시 및 프로그램의 폭 그리고 대관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고, 특히, 올해는 제3회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만큼, 관련 행사들과 시너지효과를 높여 전시관과 비엔날레 각각 서울시 도시·건축의 대표적인 시설 및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381
----------	------

제안일자 : 2021. 6. 1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인용 규정 등을 개정사항에 맞추어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위원회 인용 규정에서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변경하고(안 제8조제3항, 제12조),
- 위원 참여 제한 규정에서 ‘자문’을 ‘심의·자문’으로 하며(안 제19조제4항),
- 안 부칙에서 조문 번호 및 제목을 삭제함(안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안 제12조 중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안 제19조제4항 중 “자문대상 안전”을 “회의 안전”으로, “자문”을 “심의·자문”으로 한다.

안 부칙은 조문번호와 조제목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이용료)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u>운영자문 위원회의 자문을</u> 거쳐 정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8조(이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이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운영위원</u> <u>회의 심의를</u>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대관료 감면)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u>운영자문위원회</u>의 <u>자문을</u>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12조(대관료 감면) ----- ----- ----- ----- ----- ----- -----.</p>	<p>제12조(대관료 감면) ----- ----- ----- ----- <u>운영위원회의</u> <u>심의를</u> ----- -----.</p>
<p>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u>대한</u> <u>자문을</u> 구하기 위하여</p>	<p>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u>대하</u> <u>여 심의·자문하기 위</u></p>	<p>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안과 같음)</p>

<p><u>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u>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u>한 전시관 운영위원회</u> ----- ----- -----.</p>	
<p>1.· 2.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u>3.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u></p>	
<p>3. (생략)</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19조(회의) ① ~ ③ (생략)</p>	<p>제19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이 <u>자문대상 안건</u>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u>자문</u>에 참여할 수 없다.</p>	<p>④ ----- ----- ----- -----.</p>	<p>④ ----- <u>회의 안건</u>----- ----- <u>심의·자문</u>----- -----.</p>
<p>부칙</p>	<p>부칙</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 ----- -----.</p>	<p>이 조례는 ----- ----- -----.</p>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12조 중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시관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9조제4항 중 “자문대상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자문”을 “심의·

자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료)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u>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u>을 거쳐 정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12조(대관료 감면)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u>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u>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u>대한 자문을</u> 구하기 위하여 <u>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제8조(이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운영위원회의 심의</u> 를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대관료 감면) ----- ----- ----- <u>운영위원회의 심의를</u> ----- ----- -----.</p> <p>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u>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u> <u>한 전시관 운영위원회</u>----- ----- -----.</p> <p>1. 2. (현행과 같음)</p>

<신 설>

3. (생 략)

제19조(회의)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이 자문대상 안전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3.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9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회의 안전-----
----- 심의·자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